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1029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양성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33,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에 한하여, 공동피고 C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현영, 판사 석지성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 B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D' 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소외 D 앞으로 828,065,72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원고를 기망하여 424,233,5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자재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현금을 아내인 피고 C에게 증여한 채무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2 각 판결문 참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본 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2017. 7.경 피고 B로부터 '소외 D에서 시공하는 E 평택현장에 SR 파이프를 납품하여 달라. 공사 기성금을 받게 되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외상 전자어음 거래를 하자' 는 취지의 구매요청을 받았으며¹⁾, 이에 따라 2017. 7. 20.부터 2018.

1) 원고는 2014.경부터 소외 D 사이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필요수량은 소외 D에서 결정하여 주문하기로 하며, 매번 주문시 마다의 계약결자를 생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소외 D는

5. 30.까지 소외 D에 ‘SR파이프’를 공급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그런데 소외 D는 2017년 한해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억 2,348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을 조달하였고, 2017. 12.경 부채 규모가 약 71억 3,542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이유로 2018년 들어서 월 평균 적자 규모가 22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가 파산직전에 이르렀는바, 원고로부터 ‘SR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그럼에도 소외 D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적어도) 2018. 2. 2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를 속여 소외 D 앞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함께 424,233,50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²⁾

순번	일시	장소	편취금액 (단위: 원)
1	2018. 2. 20.경	(주)D 사무실	38,783,078원
2	2018. 3. 20.경		120,510,438원
3	2018. 4. 20.경		78,557,802원
4	2018. 5. 20.경		36,073,000원
5	2018. 5. 30.경		150,309,186원
합계			424,233,504원

¹⁾ 2017. 7.경부터 본 건 ‘SR 파이프’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²⁾ 피고 B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137, 2019고단565(병합), 2019고단1090(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52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갑 제3호증의 1, 2,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합니다), 2020. 12. 30 대법원 2020도15373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됨으로써 당원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3, 4).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4,233,504원 및 이에 대하여 적어도 2018. 5.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피고 B가 자신의 아내인 피고 C에게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이 사건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소외 D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7. 7.경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SR파이프’ 구매를 요청하여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ii) 소외 D는 2017년경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시공을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고 경영사정의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는 등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그 대표이사 피고 B도 그러한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미지급되거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iii) 실제로 (적어도) 2018. 2.경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피고 B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구제적인 재산상태는 추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할 때, 피고 B의 적극재산은 마이너스 대출금 외에 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424,233,504원이 존재하므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사해행위

1) 피고 B는 2017. 12. 28. 배우자인 피고 C와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C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는 오랜 기간 별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남편인 피고 B의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갑자기 600,0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증여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2017. 12.경 원고로부터 'SR 파이프'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사실조회 및 구석명사항 신청 등을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3) 결국 피고 B의 증여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증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능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4,233,504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및 피고 C의 원상회복의무(가액배상)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C는 사해행위에 의한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청구된 지 기 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